

인천지방법원 2024. 12. 18 선고 2024가단8231 판결 [건물명도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1. 13.

판 결 선 고 2024. 12. 18.

주 문

- 가. 피고는 원고로부터 1,667,2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.
- 나. 피고는 원고에게 2024. 6. 30.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.

판사 윤영석

별지